

2026년 제2회 국가기록원 청원경찰 채용 공고

2026년도 제2회 국가기록원 청원경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국 가 기 록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담당직무 등

구분	응시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역	비고
계		4	-		
청원경찰	청사 방호(성남)	2	· 성남분원 청사 방호 및 순찰	성남	
	청사 방호(부산)	1	· 부산분원 청사 방호 및 순찰	부산	
	청사 방호(대전)	1	· 대전분원 청사 방호 및 순찰	대전	

※ 응시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무효처리)

2. 근무조건 등

□ 계약기간 및 보수 등

- (계약기간) 무기계약(정년 만 60세, 청원경찰법에 따름)
- (근무장소) 응시분야별 근무지역 참조
- (보수조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름(1호봉, 2,000,900원). 정액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별도 지급,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복지후생) 4대보험 가입 및 분원 내 체육·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가능

□ 근무시간

- 교대근무(성남·부산주야비휴, 대전주주야야비비)
 - 해당분야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 야간근로 및 교대, 연장근무 가능
 - 보수 산정 시 유사경력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준경력(최대 2년)에 대해 호봉 산정 시 포함
 - 국가기록원 인사, 보수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상황에 따라 보수, 근무 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채용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공직 인적성 검사 (서류합격자)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6. 5. 20.(수) ~ 5. 26.(화)	'26. 6. 17.(수) 예정	'26. 6. 24.(수) 예정	'26. 7. 2.(목) 예정	'26. 7. 15.(수) 예정

※ 금회 면접시험, 인적성 검사는 국가기록원 본원(대전분원)에서 통합 실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http://www.archives.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개인이 제출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분야별 사업부서 일정에 따라 순차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배치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5. 20.(수) 09:00 ~ 5. 26.(화)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에 한함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및 방문접수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증' 표기(붙임 서식 활용)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403호) 공무직 채용담당자(우편번호 : 35208)

※ (유의사항)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 이후 도착서류는 미개봉 상태로 반송

※ **접수(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예정(미통보 시 접수처에 확인)**

5.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판단기준일: 최종(면접) 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신체 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최종 합격 후 즉시 임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최종 서류전형 예정일

직종	직무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청원경찰	소계	4		
	청사방호	(성남2) (부산) (대전1)	자격요건 (2개요건 모두 충족)	• 각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 - 주간·야간·교대 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단, 대전분원은 임용 후 1년간 주간 근무 후 교대근무 배치 예정 •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 2등급 이상(1등급, 2등급) ※ 서류전형 합격발표 이후 2주 이내 제출 ※ 원서접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경우만 인정
			우대요건	• 청원경찰 관련 학위 소지자 ※ 경호학, 경호정보학, 안전경호학, 경호경찰학, 경찰학 등 • 일반·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정단체에 한함. ※ 복수로 제출할 경우 단일종목에 한하여 유리한 1개만 인정하므로 그 외 무도단정은 제출 불필요 • 청원경찰 또는 방호·경비분야 등 방호·경비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상근한 자

-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근무기간(상근·비상근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또는 직위), 담당업무, 근무(발급)기관 명칭·직인, 발급자 성명·연락처(전화번호, e-mail 등)**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대사항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비, 청원경찰, 방호 등 관련 직무가 명시되어야 하고, 필요 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전임 근무(상근)인 경우 주40시간(8시간/일) 경력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인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전임 근무(상근):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비상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비상근): 서류심사에서 경력 인정범위 결정
 -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Ⅱ 3. 마. (2)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을 준용함
-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인적성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면접전형 시 참조 활용 (인적성검사는 객관식 200개 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1시간 이내 소요)
-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충족여부는 **최종 서류전형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 우대요건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공통 요건과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 우대요건 중 ‘경력’은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

※ 무도자격증 인정 단체(60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수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мага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무예진흥원,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6. 가점 요건

※ 최종 서류전형 예정일 기준 판단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해당 모집단위: 전 분야]

- (관련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등
- (가점사항) 서류전형(1차)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르며,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점만 적용됨
- ※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나. 장애인 가점 [해당 모집단위: 전 분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점사항) 서류전형(1차) 시 만점의 5%를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최종 서류전형예정일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사람

7.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모집인원별로 아래와 같이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별 서류전형 합격인원]

모집인원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평가방식
1명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하	적격자 전원	자격요건 적부심사
2~10명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하		
1명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	5배수	자격요건 적부심사 + 세부평가
2~10명	선발예정인원 3배수 초과	3배수	

※ (서류전형 기준) 경력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을 고려

※ (순위결정 방법) 심사위원 3인이 평가한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1차) 공직 인적성 검사

- ※ 단, 응시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이고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인 경우 및 응시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2명이고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인적성 검사 제외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정/장소 : '26. 6. 24.(수) /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예정)
- 검사방법 : 검사지(OMR 카드) 작성 후 전문기관 의뢰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인적성검사 대상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2-2차) 체력 검정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체력평가방법 : 체력 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로 체력평가 대체

- 체력인증서 제출일 : 서류전형 합격발표 이후 2주 이내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체력인증서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발급 방법 ❖

1. 응시자 주소지 관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체력 인증센터에 개별 사전 예약
2. 체력 인증센터 방문 및 체력 측정
3. 체력인증서(평가 내역 포함) 발급, 재발급 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http://nfakspo.or.kr>)
-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바코드, 직인, 워터마크가 삽입·출력된 경우만 인정
4. 유의 사항 : 다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 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 일자 또는 시간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체력 인증센터에 사전문의 후 예약 필수

□ (3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채용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조직 내의 리더십 및 협력자세와 친화력,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 업무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기본 소양

[평가 방식]

- 개별면접 혹은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일정/장소 : '26. 7. 2.(목) /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예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제출)

- ①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② 응시원서[채용 서식_(1)] 1부
- ③ 이력서[채용 서식_(2)] 1부
- ④ 자기소개서[채용 서식_(3)] 1부
- ⑤ 업무수행계획서[채용 서식_(4)] 1부
-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채용 서식_(5)] 1부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채용 서식_(6)] 1부
- ⑧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채용 서식_(7)] 1부
- ⑨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채용 서식_(8)] 1부
- ⑩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남성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본

○ (해당자 제출)

- ① 학력 해당자 : 졸업증명서 1부
- ② 장애인 가점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 ③ 경력/자격증 우대 :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④ 취업지원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주의사항 】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경력, 학력, 자격 등)는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3개월 경과 발급본 불인정)**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자격요건 및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금지(심사 이전에 제외 처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지원 직종과 관련된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시간제),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시험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서류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
- 경력(재직)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종합격 공고 후에도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음에 유의**

9. 기타(유의) 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대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 됩니다.**

※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 경찰청장이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격자 개별통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원하는 경우 청구 기간동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록원 팩스(042-472-3903), 담당자 이메일 (kjskye77@korea.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6. 5. 20. ~ '26. 9. 17.(120일 이내)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근무시간 내(09~18시)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채용 담당자 ☎ 042-481-6244
- 청원경찰 보수 ☎ 042-481-6220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 국가기록원 담당자 기재

응시직종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청원경찰	청사방호 ※ 근무지역 ()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으로 편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미제출
< 공통 사항, 필수 제출 >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업무수행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8.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9. (남성)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 (학력) 학력증명서 (부) ※ 해당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의 학위 등 졸업증명서		
2. (장애)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3. (자격증) 자격증 사본 (부) ※ 해당 우대요건을 증명하는 자격증(증명서) 사본 ※ 공인 무도단종의 경우 가장 단수가 높은 단종 1개만 제출		
4. (경력) 경력 증명서 (부) ※ 해당 우대요건의 경력증명서만 제출		
5. (취업지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워드 작성 (수기 작성 금지)**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접수 후 채용담당자가 기재 후 별도 안내)
 - ◆ **응시직종** : 공고문의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청원경찰)을 기재
 - ◆ **응시분야** : 공고문의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청사방호)를 기재
 -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정확히 기재
 - ◆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 **학력사항** : 졸업 외에 재학 · 수료 · 중퇴인 경우도 기재(동그라미 표시)
 - ◆ **기술자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해당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학력, 자격, 경력 등은 응시자가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된 증빙 서류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본)가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국가기록원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성명		
응시 직종					
응시 분야	※ 근무지역 ()		성별	복수국적 해당여부	
생년월일년월일(만세)				
주 소	(우)				
전자우편					
전화(자택)			휴대전화		

응시표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응시 직종 (응시 분야)	
성명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년도 제2회 국가기록원 청원경찰 채용 심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기록원에 근로하는 기간

개인정보 수집·활용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국적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 지문, 얼굴 인식 등 출입기록 정보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채용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원조회관련 관공서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신원조회 확인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신원조회 불가로 채용 전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지원자

(서명)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청원경찰 / 청사방호
근무지역 필수 기재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403호(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공무직팀 채용담당자 앞
(042-481-6244)

**[국가기록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증]**

(우) 35208